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10. 17 선고 2023가단116417(본소), 2024가단114661(반소)

판결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 고 A

원고(반소피고) B

원고 및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연 담당변호사 이
영기, 이혁

피고(반소원고) 합병된 주식회사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D

피 고 E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이은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박
태영

변 론 종 결 2024. 9. 26.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2. 1.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및 원고(반소피고) B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E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 및 피고 E이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및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70,000,000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B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이 사건 본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 B는 피고 회사에게 113,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주주들로서, 그 발행주식 총수 4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중 F 대표자인 원고 A이 34,000주를, 그의 배우자인 원고 B가 나머지 6,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들은 2020. 1. 31. 피고 E이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200,000,000원(액면가 5,000원 × 40,000주)에 양도하면서 아래와 같은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E은 C의 이행의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협약서 중 발췌

A, B(이하 '갑'; 원고들)와 (주)C(사내이사 E; 피고)(이하 '을')은 (주)F의 주식양도양수계약과 관련하여 (주)F 사업에 관한 권리를 갑으로부터 을에게 인계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 다.

- 다 음 -

1. 갑은 을에게 (주)F 주식 40,000주를 일금 이억 원에 양도하며, 을은 붙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붙임 생략)에 의거 대금지불을 한다.
2. 을은 (주)F의 2020년 1월 31일 현재 군포시 G중양회로부터 대출되어 있는 군포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일억이천만 원을 2020년 2월 20일부터 2021년 7월 20일까지 매월 20일에 667만 원씩 18회로 나누어 상환하며, 2021년 7월 20일에 갑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한다.
3. 을은 갑에게 세후 금액 400만 원의 월 급여 및 별도로 월 3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소 120개월간(2020년 2월 1일 - 2030년 1월 31일)의 고용을 보장하여 근로계약을 작성한다.

단,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 계약 5년 이후부터는 서로 협의하여 절충할 수 있다.

(중략)

다. C은 이 사건 협약 및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일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주식 일체를 양수하고 2022.

4. 18. F을 흡수합병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3. 9. 6. C을 흡수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를 포괄승계한 피고 회사와 이 사건 협약상 C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대한 판단

1) 항변 요지

C은 F의 G중앙회에 대한 채무 120,000,000원을 인수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10년간 고용보장을 해 주는 대신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만 상호 동의 하에 향후 C의 자본증자와 신용개선 등 목적으로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협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된 것뿐이므로, 그 유상양도에 관한 부분은 비진의 의사표시 내지 통정허위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2)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어떤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 등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5다25673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기재된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부인하고 이를 단순히 유상양도의 외관 형성을 위한 당사자들 사이의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특히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즉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양도 후 3년이 지나도록 대금의 지급을 요청한 바 없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자체로 그 대금지급의 방법 등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를 이든하이든에 대납하도록 하였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협약서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문언 자체로 명백한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기재와 달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들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이 사건 주식 중 34,000주의 양도대금 170,000,000원(5,000원 × 34,000주), 원고 B에게 나머지 6,000주의 양도대금 30,000,000원(5,000원 × 6,000주)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 양수 다음날인 2020. 2.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주식양도양수계약 당일인 2020. 1. 31.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함을 전제로 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예비적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본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예비적으로, C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대로 2020. 1.부터 2023. 8.까지 원고들에게 지급한 총 193,350,000원의 급여 중 원고 B에 대한 113,800,000원 부분은 실제 원고 B로부터 어떠한 근로제공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아야 한다.

나. 판단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각 증거에 을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협약 제3항에 따라서 약정 급여가 매달 원고들의 각 계좌에 나누어 지급되어 온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 B가 지급받은 금원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급부행위의 원인이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다는 주장증명이 없다. 피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위 급여의 약정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은 변론종결 후 비로소 있었을 뿐이고 마찬가지로 그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노유경